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4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9.

고 명 욱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부들이 겪고 있는 가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가 결혼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80
----------	----------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고명욱, 황국주, 박정환,
임미연, 권숙자, 도하석,
박종길, 서보영

1. 제안이유

-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및 제2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부담 및 압박감을 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사업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4.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

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